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59
----------	--------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관련 규정 추가(안 제2조)
- 다. 위원 해촉 시 신규 위촉자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3조)
- 라. 서면 심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마. 지명에 관한 조사 내용 삭제(안 제8조)
- 바. 운영세칙 조항 신설(안 제11조)
- 사. 법령과 상이한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5. ~ 10. 25.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23. 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로,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신과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정”을 “폐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그 밖의 지

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을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로, “조사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합호칭있”을 “복합호칭이 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와의”를 “지방자치단체와”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 ----- 1명과 부위원장 ----- - 10명 ----- .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생략)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 당연직: 관계공무원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신 설>

<신 설>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임기) -----
----- .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이하 “관할 구역”으로 한다)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신과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기능) -----

--- 심의·의결한다.

1. ----- 폐지

<삭 제>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제2호
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
연 지명, 지표물 지명등 모든 지
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
칭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
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
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
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
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사
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
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
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참여한 관
련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
구할 수 있다.

제10조 (생략)

2. 지명-----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
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
----- 조사할
수 있다.

② -----

----- 복합호칭이 있-----

-----.

③ -----

----- 지방자치단체와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
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마포구 지명위원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신동빈
연 락 처	02-3153-8304